##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

# 심의 의결

**안 건 번 호** 제2024-003-040호

안 건 명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피 심 인 (사업자등록번호: )

대표자

의결연월일 2024. 2. 14.

## 주 문

- 1.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의를 촉구한다.
  - 가. 개정된 「개인정보 보호법」(법률 제19234호 2023.9.15. 시행, 이하 '보호법' 이라 한다)에는 공중위생 등 관련 내용의 보호법 적용 제외가 삭제되어 보호법이 모두 적용되어야 하므로, 피심인은 보호법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,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등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조치 등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취급자 등에게 교육하고, 안내하여야 한다.

## 이 유

## I. 기초 사실

피심인은 「舊 개인정보 보호법」(법률 제16930호 2020.8.5. 시행, 이하 '舊 보호법'이라한다)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,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.

#### < 피심인의 일반현황 >

피심인명	사업자등록번호	대표자 성명	주소	직원 수

## Ⅱ. 사실조사 결과

#### 1. 조사 배경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에서 개인정보 유출 및 오·남용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피심인이 운영하는 관련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을 점검()하였다.

## 2. 행위 사실

### 가. 개인정보 수집 현황

피심인은 ' '등에서 정보를 기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보유하고 있다.

개인정보파일	수집・이용 항목	수집일	보유건수(명)

## 나. 실태점검 관련 사실관계

피심인은 ' ', ' 시스템', ' ', ' 시스템' 등 4개 시스템을 구축.운영하면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며, ' 시스템'을 구축.운영하면서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의 접속기록 중 일부항목을 누락하고, 접속기록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았으며, ' 시스템'을 구축.운영하면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중 다운로드 수행내역을 누락하였다.

피심인은 실태점검 이후 ' ', ' 시스템', ' ', ' 시스템', ' ', ' 시스템' 등 4개 시스템의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'년 월부터 '년 월사이 완료하였고, ' 시스템'의 접속기록 누락사항을 '년 월 시정조치하고 접속기록을 점검하고 있으며 ' 시스템'의 접속기록 누락사항은 '년 월 시정조치하였다.

## Ⅲ. 위법성 판단

#### 1. 관련 법 규정

舊 보호법 제29조는 "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,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"고 규정하고 있다.

같은 법 시행령(대통령령 제32813호, 이하'舊 시행령') 제30조제1항은 "개인정보 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.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(제4호) 등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한다."고 규정하고 있다.

「舊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」(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-2호,이하'舊 고시') 제8조제1항은 "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."고 규정하고 있으며,제8조제2항은 "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오·남용,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."고 규정하고 있다.

舊 보호법 제33조제1항은 "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"고 규정하고 있다.

舊 보호법 제58조제1항은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(3호)"라고 규정하고 있다.

개정된 보호법 제15조제1항은 "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.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(7호)"라고 규정하고 있으며, 舊 보호법 제58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였다.

또한 보호법 제75조제5항은 "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부과·징수한다.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·동기·결과, 개인정보처리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"하고 규정하고 있다.

#### 2. 위법성 판단

# 가. 공중위생 등 긴급.일시적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舊 보호법 제3장부터 제7장까지 적용 제외

[舊 보호법 제58조제1항제3호]

피심인이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한 개인정보는 舊 보호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3장부터 제7장이 적용되지 않는다.

각종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환자 격리, 감염원 추적 등 활동과 긴급재난 등으로부터의 이재민 구조·구호 활동은 촌각을 다투고,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법령에 정한 기준·절차를 우선하게 되면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기 때문이다.

 피심인은
 관련 5개 시스템을
 를

 위한 위기관리 상황에서
 , , , 등을 위해

 긴급히 구축·운영('년 월 이후)하였으며,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취해진

 상황을 고려할 때
 등 피심인이 운영한 4개

시스템은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고, 일시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舊 보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제3장부터 제7장까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.

피심인이 운영한 ' 시스템'의 수집 정보는 관리를 위해 영구 보관되어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舊 보호법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, 동 시스템 점검결과 확인된 접속기록 1개 항목 누락(다운로드 수행 내역)은 보호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나, 긴박했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처분에 이를 수준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 하여 개정된 보호법 제75조제5항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면제한다.

<

5개 시스템 현황 >

구분		구축 일자	서비스 종료 일자	개인정보 파기 일자	개인정보 보유기간

#### 3. 고려사항

舊 보호법은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한 긴급하고 일시적인 개인 정보에 대해 같은 법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 하였으나, 개정된 보호법은 제15조제1항제7호에 공중위생 등에 관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수집 근거를 마련하고 舊 보호법의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하며 향후의 공중위생 등 관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보호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.

피심인은 개정된 보호법에 주의하여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긴급하게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,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에 필요한 조치 의무를 이행 하여야 한다.

## Ⅳ. 결정

## 1. 주의 촉구

피심인의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한 긴급하고 일시적인 개인정보처리 행위가 舊 보호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3장부터 제7장까지에 적용되지 않으나, 개정된 보호법은 공중위생 등에 관한 개인정보 처리가 모두적용하므로 「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」(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-9호, 이하 '조사처분규정')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의촉구한다.

가. 개정된 보호법에는 공중위생 등 관련 내용의 보호법 적용 제외가 삭제되어 보호법이 모두 적용되어야 하므로, 피심인은 보호법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,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등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조치 등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취급자 등에게 교육하고, 안내하여야 한다.

#### V. 결론

피심인에 대하여 보호법 제75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하고 조사처분규정 제23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